의 안 번 호			제	ই
의		결	2024.	
연	월	일	(제	회)

의 결 사 항

여 객 자 동 차 운 수 사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〇〇〇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광역버스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선 신설의 필요성 등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타당성 평가 내용, 교통 전문기관을 통한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내용(안 제6조의2 신설)
 - O 대안경로, 경쟁노선, 통행시간, 통행량, 잠재수요 등의 타당성 평가 내용 신설
- 나.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권한 위임(안 제37조제1항제1호나 목 신설)
 -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의 권한 위임 사항에 광역버스운송사업 타당성 평가에 대한 권한 추가
- 다. 권한 위탁 전문기관 설정(안 제38조제5항 신설)
 -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업무를 교통 전문기관인 '한국교 통안전공단 또는 한국교통연구워'으로 위탁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 없음

라. 기 타: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를 각각 제6조의3부터 제6조의6까지로 하고,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노선의 타당성 평가)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의 규모,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.

- 1. 대안경로
- 2. 경쟁노선
- 3. 통행시간
- 4. 통행량
- 5. 잠재수요
- 6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6조의3(종전의 제6조의2)제1항 및 같은 조(종전의 제6조의2)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"법 제5조의2제1항"을 각각 "법 제5조의3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법 제5조의2제2항"을 "법 제5조의3제2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법 제5조의2제4항"을 "법

제5조의3제4항"으로 한다.

제6조의4(종전의 제6조의3) 제4항제2호 중 "법 제5조의2제3항"을 "법 제5조의3제3항"으로 한다.

제6조의5(종전의 제6조의4)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6조의3제2항"을 "제6조의4제2항"으로 한다.

제37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버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법 제5조의2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제3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6조의2(노선의 타당성 평가) 국
	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
	1항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
	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경
	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
	함하여 해당 사업의 규모, 지원
	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
	<u>한다.</u>
	<u>1. 대안경로</u>
	<u>2. 경쟁노선</u>
	<u>3. 통행시간</u>
	<u>4. 통행량</u>
	<u>5. 잠재수요</u>
	6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
	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제6조의2(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	제6조의3(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
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	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
차 등) ① 법 제5조의2제1항, 같	차 등) ① <u>법 제5조의3제1항</u>
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	
4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"이란	
각각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	
다.	.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	② <u>법 제5조의</u>

의2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 송사업 수급계획(이하 "수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하여야 한다.

- 1. ~ 5. (생략)
- ③ (생략)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(이하 "수급조절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⑤ 법 제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등록 제한의 통보를 받은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1. · 2. (생략)

<u>제6조의3</u>(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<u>조</u> 및 심의사항 등) ①・② (생 략)

3제1항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
4
법 제5
조의3제2항
· ⑤ 법 제5조의3제4항
○ 日 小りエーリン川4 8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세6조의4(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
및 심의사항 등) ①・② (현행
과 같음)

- ③ 삭 제
- ④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(생략)
- 2. <u>법 제5조의2제3항</u> 및 제4항 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제한 기간 및 고시에 관 한 사항
- 3. (생략)
- ⑤ (생략)
- 제6조의4(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)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.
 - 1. ~ 4. (생 략)

제6조의5 (생략)

- 제37조(권한의 위임)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「대도 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 별법」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.
 - 1. 운행형태가 직행좌석형인 시 내버스운송사업(별표 1의3에

4
1. (현행과 같음)
2. 법 제5조의3제3항
3. (현행과 같음)
⑤ (현행과 같음)
제6조의5(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
해임 및 해촉)
<u>제6조의4제2항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제6조의6</u> (현행 제6조의5와 같음)
제37조(권한의 위임) ①
.
1

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운행되 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선만 해당한다) 및 운행형태가 광 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. (생 략)

<u><신 설></u>

<u>나</u>. ~ <u>머</u>. (생 략)

2. (생략)

②・③ (생 략)

제38조(권한의 위탁) ① ~ ④ (생략)

<신 설>

가. (현행과 같음)
나. 법 제5조의2에 따른 광역
버스운송사업의 타당성 평
<u>가</u>
<u>다</u> . ~ <u>버</u> . (현행 나목부터 머
목까지와 같음)

- 2. (현행과 같음)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38조(권한의 위탁) ① ~ ④ (현 행과 같음)

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 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운 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「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・운영

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
<u>다.</u>
<u>⑥</u> ~ <u>⑧</u> (현행 제5항부터 제7
항까지와 같음)